# 미래설계 장기플랜 연금예금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미래설계 장기플랜 연금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 '연금지정금액'이라 함은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총 원금이며,
- '만기지정금액'이라 함은 만기시점 수령하고자 하는 원금입니다.

# 제5조 가입기간

6년 이상 50년 이하 연단위로 정합니다.

# 제6조 가입금액

- ① 연금지정금액은 최소 3백만원 이상으로 필수적으로 지정합니다.
- ② 만기지정금액은 연금지정금액을 제외하고 최소 3백만원 이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정합니다.

# 제7조 연금수령 방법

- ① 신규일의 다음달 해당일부터 만기일까지 1개월 주기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 ②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지정금액과 연금지정금액의 이자, 만기지정금액의 이자를 1개월 주기로 분할 수령합니다.
- ③ 만기지정금액은 만기일에 수령합니다.
- ④ 연금으로 수령하는 원금의 원미만은 절사하며, 그 절사금액의 합은 최종 회 차의 원금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⑤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과 만기지정금액의 수령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에 지급합니다.
- ⑥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과 만기지정금액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금주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해당일 에 자동 입금합니다. 단, 이 예금이 압류 등에 따라 지급 제한된 경우 연금 수령이 불가하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도래하는 연금수령 해당일에 자 동 입금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거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능 할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하여 수령 가능합니 다.

#### 제8조 이자율적용

①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미래설계 장기플랜 연금예금'의 금리

주기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② 금리주기는 1년, 2년, 3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신규가입일 이후 최초 금리 주기 적용기간 경과 후에는 매 금리주기 변경 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금리주기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④ 잔여기간이 금리주기보다 작은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리주기를 적용합니다.
- ⑤ 금리주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점의 금리주기 종료 후 최초 도래하는 금리주기 변경일부터 적용합니다.
- ⑥ 금리주기 변경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합니다.

# 제9조 중도해지이자율

만기일 이전에 이 예금을 해지할 경우 잔여 연금지정금액과 만기지정금액 전액을 해지하며, 신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홈페이지에 고시한 '미래설계 장기플랜 연금예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되어,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 제 10조 만기후이자율

제7조 ⑥항에서 만기지정금액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만기지정금액 수령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 또는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만기후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일반)정기예금의 만기지급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만기후이자율은 변경된 (일반)정기예금의 만기지급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일로부터 기간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제11조 기타사항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일부해지,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부칙

- 1. 이 특약은 2015.04.01부터 시행합니다.
- 2. 이 특약은 2015.06.1부터 시행합니다.